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55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김소희·장동혁·박준태

박덕흠 • 이인선 • 김성원

백종헌 • 고동진 • 인요한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친화적 사업장임.

2018년까지는 의료법인도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여 현재 5개소의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의 자회사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시도가 중단된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항,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5).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의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한한다)"로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의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한한다)"로 한다.

제22조의2(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제1항"을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제5항"을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고,

부 칙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제6항"을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
한 지원) ①・② (생 략)	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③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	
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	
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	
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	
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	
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	
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	
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	
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	
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u>제2조</u>	제2조제8
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호 및 제22조의2(의료법인이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한한다)-
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하다.

④·⑤ (생 략) <신 설>

<u>제22조의2</u>(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에 대한 특례) (생 략)

<u>제22조의3</u>(장애인 표준사업장 생 산품의 우선구매 등) (생 략)

-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에 대한 특례) (현행 제22조의2 와 같음)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 산품의 우선구매 등) (현행 제2 2조의3과 같음)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의 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한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생략)
- 2. <u>제2조제8호</u>의 기준을 갖추지못하게 된 경우
- 3. (생략)
- ③ ~ ⑥ (생 략)
-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생 략)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 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 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 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 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 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 ⑪ (생 략)
-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의
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
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2조의
5제1항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제2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u>제22조의4제6항</u>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 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 3. (생략) ② ~ ⑤ (생략)